



‘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 구현’

우정공무원교육원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우정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개정

1. 관 련

가. 우정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허가 규정(우정공무원교육원 훈령 제139호)

나. 우정공무원교육원 훈령 및 예규 제정세칙(우정공무원교육원 훈령 제148호)

2. 우정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허가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『시설사용허가 규정』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겠습니다.

가. 개정이유

o 대형강의실 1일 8시간 미만 사용자와 생활관 1인1실 숙박자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

나. 주요 개정내용

o 관련법령 현행화(제1조)

o 사용료 책정기준을 실제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준 마련(제8조)

o 사용료 납부방법의 명확화(제10조)

붙임 1. 시설사용허가 규정 주요개정사항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2. 시설사용허가 규정 전문(개정) 1부. 끝.

★주무관

최형원

시설운영팀장

안승일

교육지원과장

代조한섭

원장

09/09

이영구

협조자 운영지원팀장

류희발

시행 교육지원과-4509 (2016.09.09.) 접수

()

☎ 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-14(유량동) / koreapost.go.kr

전화 041)560-5151 /전송 041)560-5289 / kagea@korea.kr

/ 비공개(1)